

의안번호	제 184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월 일 (제 406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월 4일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4일

발 의 자 : 박재주·김현문·이정범  
박병천·박용규·유상용  
이윅희 의원

## 1. 제안 이유

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청북도 선수단의 소속감 증대를 통한 결속 강화와 경기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출전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조문에 사용된 관련 법률 제명을 표기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나.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 규정에 담도록 함.

(안 제2조제5호 신설)

다. 조항 제목에 조문의 내용이 보다 명확히 담기도록 변경함(안 제3조)

라. 학생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3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를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수단”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의 학생선수 및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각종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시책과 권장)”을 “(시책의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선수단이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u>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u> 제3조 -----</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선수단”이란 「<u>학교체육진흥법</u>」 제2조제4호의 <u>학생선수</u> 및 제2조제6호의 <u>학교운동부지도자</u>, <u>각종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u>을 말한다.</p>
<p>제3조(<u>시책과 권장</u>) ①·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3조(<u>시책의 수립·시행</u>)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선수단이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다.</u></p>

# 관 계 법 령

## □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③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52호, 2018. 3. 19. 제정]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별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관련)

### 1.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등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및 인솔자에 대한 격려 금품 지급 및 식사 (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 매년 개최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청북도 선수단의 통일된 복장착용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소속감을 높여 학생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출전복 구입비 발생.

## 2. 관련조문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제3조 제3항)

## 3. 비용 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의 운영비·자산취득비의 용품비(운동복, 임원 단복)의 기준단가로 하며, 인원 산출기준은 (2019년~2022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충청북도 선수단으로 참가한 학생선수의 평균 인원(약 800명)과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충청북도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감독, 코치 약 430명)으로 추계함

※ 향후 출전선수단의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113,15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565,7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개정조례안 시행 시 추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복 구입	565,750	113,150	113,150	113,150	113,150	113,150

다. 추계비용의 상세내역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충청북도선수단 출전복 구입(안 제3조제3항)
- 출전복 구입비

1. 출전선수단

- 학생선수 출전복: 80,000원 × 800명 = 64,000,000원
- 학생선수 출전모자: 5,000원 × 800명 = 4,000,000원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학교운동부지도자:
  - 100,000원 × 430명 = 43,000,000원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학교운동부지도자 모자:
  - 5,000원 × 430명 = 2,150,000원
- 구입단가: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의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의 용품비(운동복, 임원단복)의 기준 금액

※ 임원의 인원수 산출: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충청북도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감독, 코치 등)

- 주기: 매년

4. 작성자: 체육건강안전과 체육교육팀 주무관 이영호(043-290-2157)